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번 호	10398
-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5. 8.

발의자 : 이인선 · 강대식 · 박정하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강선영 · 성일종 · 박준태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김정재 · 고동진 · 조정훈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배준영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고 있으며, 근로소득 증대는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임.

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증대 정책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,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4).

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